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 - 1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(일몰법 규정)
- 다.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비표준어 및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(신설 제2조의2)
- 나.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 수를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(안 제8조)
- 다.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비표준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

3. 개정 조례안 : 별도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규제여부 : 해당 없음
- 라. 협 의 : 해당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1. 1. 13 ~ 2011. 2. 2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- 해당 없음
- 3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(2011. 2. 10)

붙임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”을 “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마포구소속”을 “마포구 소속”으로 하고, “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(이하 “학자금”이라 한다)대여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(이하 “학자금”이라 한다) 대여”로 하고, “기금”을 “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제2호 중 “이자 수익금”을 “이자 수익금”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회계연도마다”를 “회계년도마다”로 하고, “총소요금액”을 “총 소요금액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학자금대여 목적이외에”를 “학자금 대여 목적 이외에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구좌”를 “계좌”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 중 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올리는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며, “6인”을 “6명”으로 하고, 제4항제2호 중 “2인”을 “2명”으로 하며, 제5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조의3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개의”를 “회의를 개최”로 한다.

제3조의4제2항 중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하며, “인정할 때에”를 “인정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의5제1항 중 “간사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3조의6제1항 중 “회계연도마다”를 “회계년도마다”로 하고, “출납폐쇄후”를 “출납폐쇄 후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마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책임중”을 “책임 중”으로 하고, “기금운용관에게,지출원 과”를 “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마포구소속”을 “마포구 소속”으로 하고, “전문대학,대학(대학교 포함) 및 기타 교육부장관”을 “전문대학, 대학(대학교 포함)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하며, “재학중인”을 “재학 중인”으로 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각호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제1호 중 “입학금,수업료”를 “입학금, 수업료”로 하며, 제2호 중 “동일자녀”를 “동일자녀”로, “이중대여”를 “이중 대여”로 하고, 제4호 중 “제5조의 규정에”를 “5조에”로 하고,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제4호 중 “5년제”를 “6년제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국고 대여장학금”을 “국고 대여 장학금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2인 이내”를 “모든 자녀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임금지급시”를 “임금지급 시”로, “월입금액의”를 “월 입금액의”로, “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.”를 “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.”로 하고, 제3항 중 “2년거치 3년균등”을 “2년 거치 3년 균등”으로, “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”를 “3년 내에 상환이 안 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제4항 중 “단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, “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”을 “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”으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각호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2년이내에”를 “2년 이내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신청금포함”을 “신청금 포함”으로, “초과 할”을 “초과할”로, “근속년수”를 “근속연수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조례시행”을 “조례 시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<u>환경미화원자녀</u> <u>학자금대여기금</u> 설치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구성) ① <u>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</u>(이하 "학자금"이라 한다)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<u>이자수익금</u>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에 필요한 <u>총소요금액</u>을 산정하여 일반 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<u>환경미화원</u> <u>자녀학자금</u> <u>대여기금</u> 설치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<u>마포구</u> 소속 <u>환경미화원</u> <u>자녀학</u> <u>자금</u> <u>대여기금</u>..... </p> <p>제2조(기금구성) ①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<u>환경미화원</u> <u>자녀학자금</u>(이하 "학자 <u>금</u>"이라 한다) <u>대여</u>..... <u>환경미화</u> <u>원</u> <u>자녀학자금</u> <u>대여기금</u>(이하 "기금" <u>이라</u> 한다)..... <u>각 호</u>..... 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이자 수익금</u> ② <u>회계연도마다</u> <u>총</u> <u>소요금액</u>..... </p> <p>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<u>기금의 존</u> <u>속기한</u>은 「<u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</u> <u>본법</u>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<u>조</u>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 <u>되</u>, <u>존속기한</u>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 <u>금</u>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<u>때</u>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<u>존속기한</u> <u>을</u> 연장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기금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<u>학자</u> 금대여 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·관리하며 별도의 <u>구조</u>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기금 운용·관리) ① <u>학자</u> 금 대여 목적 이외에</p> <p>② <u>계좌</u></p>
<p>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환경미화원</u>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<u>부</u>의하는 사항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<u>6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<u>2인</u></p> <p>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<u>당해</u>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<u>환경미화원</u>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....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의</u> <u>회의에</u> <u>올리는</u> ② <u>1명</u>..... <u>6명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2명</u></p> <p>⑤ <u>해당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총괄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회의를 개최....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의4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</p>	<p>제3조의4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연도.....</p> <p>인정할 때에는</p>
<p>제3조의5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,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.</p> <p>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5(간사 및 수당) ① 간사 1명.....</p> <p>② 예산의 범위에서</p>
<p>제3조의6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3조의6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 회계직 공무원)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.</p>	<p>제4조(기금 회계직 공무원)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책임 중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과</p>
<p>제5조(대여대상)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, 대학(대학교 포함)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대여대상) 마포구 소속 전문대학, 대학(대학교 포함)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학 중인.....</p>
<p>제6조(대여제한대상)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포함) 전액 면제자 2.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. (생략) 4.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.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	<p>제6조(대여제한대상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. 입학금, 수업료 2. 동 일 자녀..... 이중 대여 3. (현행과 같음) 4. 제5조에 5. 그 밖에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대여횟수 제한) 자녀 1인당 대여 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5년제: 12회</p>	<p>제7조(대여횟수 제한) 1명.....</p> <p>..... 각 호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6년제:</p>
<p>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대여 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.</p> <p>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</p> <p>..... 국고 대여 장학금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1명.....</p> <p>..... 모든 자녀.....</p> <p>.....</p>
<p>제9조(이자 및 상환) ① (생략)</p> <p>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공제한다.</p> <p>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. 다만,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이자 및 상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임금지급 시 월 임금액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.</p> <p>③ 2년 거치 3년 균등</p> <p>..... 3년 내에 상환이 안 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</p> <p>.....</p> <p>④ 단서에 따라</p> <p>...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0조(대여취소 및 일시상환)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대여취소 및 일시상환)</p> <p>.....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2. (생략) 3.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<u>2년</u>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,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. (생략)</p>	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2년</u>이내에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채권보전)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(신청금포함)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<u>초과</u> 할 경우에는 <u>근속연수</u>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<u>1인</u>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<u>1인</u>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.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채권보전) ①(신청금 포함)..... <u>초과</u>할 <u>근속연수</u> <u>1명</u> <u>1명</u>..... ② 제1항에 따라 ③ <u>그</u> 밖에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... <u>조례</u> 시행..... </p>